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6.11.23(수) 10:00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일

3. 제안 이유

-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센터 행정지원 등을 규정
- 센터출연금 등 지원 및 연간운영·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규정
- 센터 업무·회계 등에 대한 조사·감독, 보고·관련 서류제출에 관한 규정

5. 검토의견

- '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'은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

화하기 위하여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센터 출범에 따른 분야별 창업현황, 공무원 파견현황과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차년도 국도비 포함 28억 6천만원에서 2~5차년도의 경우 46억 7,5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비용이 증가한 이유와 1차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임.